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978 |
|----------|-----|

발의년월일 : 2016년 2월 5일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1명)
찬 성 자 : 성백진, 김종욱, 김영한
이신혜, 김창원, 우형찬
김희걸, 김혜련, 이현찬
최관술, 박호근, 문영민 의원(12명)

1. 제안이유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참여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함
- 나.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정의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을 포함시켜 사업자 참여자격을 확대시킴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1)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3호 중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 등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 기업 등을 말한다.</p> | <p>제2조(정의) -----</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 「<u>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u>」, -----</p> <p>-----</p> <p>----- 「<u>사회적기업 육성법</u>」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 기업, 「<u>중소기업기본법</u>」 제2조에 따른 <u>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u> 등을 말한다.</p> |